

『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
 - 출연 예정액 : 금62백만원
 - 출연 필요성
 -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
 - 출연근거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6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 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6조
 -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114조
-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으로 2016년도 출연금 51,519천원 대비 11,358천원 증가한 62,87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(전전년도 보통세의 0.015%를 출연), 2017년도에 62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본 동의안은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6조 “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”는 규정에 따라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, 지방세제의 발전 연구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